

모두가 존중받는 ARKO를 위한

'인권침해 구제절차'

한국문화예술위원회(ARKO)는
임직원을 포함하여 모든 고객과 예술인의 인권을 존중합니다

우리 모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인권침해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시다.



인권보호를 위한 ARKO의 약속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기관을 둘러싼 모든 이해관계자의 존엄과 가치 보호를 위해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인권 침해 발생 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한 절차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1. 인권침해 구제절차란?

- '인권'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이며, '인권침해'는 이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 '인권침해 구제절차'는 위원회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상황을 해결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원상회복 시키는 절차입니다.
 - ▶ 대상 : ARKO 임직원 및 ARKO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내·외부 이해관계자
 - ▶ 범위 : 차별 행위,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성폭력, 기타 기본권 침해 등

💡 이런 경우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위원회 임직원으로부터 부당한 차별이나 대우를 받았을 때
- 위원회 사업 운영 과정에서 인격권, 평등권 등 기본적 인권을 침해당했을 때
- 기타 위원회와 관련된 인권 침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2. 공정한 인권침해 구제를 위한 '인권경영위원회'

- 신고된 사건은 담당 부서의 독단으로 인권침해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 공정성을 갖춘 인권경영위원회가 신고된 사건을 엄격하게 심의합니다.

▶ 인권경영위원회 구성(총 7명)

- 인권침해 구제절차의 공정성을 위해 외부위원을 과반으로 구성합니다.

내부위원(총 3명)

기관장(인권경영위원장),
인권업무 소관 본부장,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자 1인



외부위원(총 4명)

ESG경영위원회 외부위원 중
관련 전문가 4인으로 구성

- 외부위원은 필요시 인권전문가 등 이해관계자를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습니다.

▶ 인권경영위원회 주요 역할

- 접수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심의
- 인권침해 여부 판정 및 시정 권고
-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구제 조치 결정

3. 인권침해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인권침해 신고는 본인이 직접 피해를 입었거나, 타인의 침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누구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신속한 인권침해 해결을 위해 다양한 신고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신고센터를 이용하시면 빠르고 편리합니다.

🖥️ 온라인으로 신고하기

1. ARKO 신고센터 (신고자가 직원인 경우)

- ① 아르코 신고센터 접속 (아르코 광장 또는 메신저 메뉴바에서 확인 가능)
- ② ARKO 신고센터 <인권복무신고> 클릭
- ③ 신고유형을 '인권·차별'로 선택하고 신고 내용 작성



2. 레드휘슬 헬프라인 신고 (신고자가 직원인이 아닌 경우)

- 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arko.or.kr) 접속
- ② 상단의 열린경영 클릭 후 부패신고센터 클릭
- ③ 부패신고센터 내 [레드휘슬 신고] 클릭
- ④ 신고 유형을 '갑질·인권침해 행위'로 선택한 후 신고 내용 작성



📍 방문·우편·이메일 신고

1. (방문) 인권경영 담당 부서를 방문하여 [인권침해 신고서] 직접 제출
2. (우편 및 이메일) 인권경영 담당 부서장 또는 담당자에게 [인권침해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인권침해 신고서는 [인권침해 구제절차 운영 지침]을 서식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4. 신고 후에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 신고부터 결과 통보까지, 모든 과정은 비밀이 보장되며 공정하게 진행됩니다.

STEP1. 신고 및 접수

신고서 제출(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STEP2. 사실 관계 확인

주관부서(인사소통팀)에서 신고 내용 확인 및 당사간 합의 조정

이런 경우, 신고 받은 사건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1. 신고의 내용이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신고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3.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 이상 지나 신고한 경우
4. 신고가 제기될 당시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5. 신고가 익명이나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6. 신고의 내용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닌 경우
7.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
8. 인권경영위원회가 결정한 사건을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다시 신고한 경우

STEP3. 보고 및 상정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장 보고 및 승인을 얻어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 인권경영위원회 회의 상정

이런 경우, 별도 절차에 사건이 이관됩니다.

1. 신고 내용이 성희롱·성폭력 고충과 관련된 경우 →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로 이관
2. 신고 내용이 근로조건·인사관리·처우 등 직무조건과 관련된 경우 → 인사고충상담창구로 이관

인권경영위원회는 접수된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1. 신고인·피해자·피신고인(이하 "당사자"라 한다)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2.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3.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4.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 ※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STEP4. 심의 및 의결

인권경영위원회에서 인권침해 여부 최종 결정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인권침해 기각 결정이 됩니다.

1. 사건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2. 조사결과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STEP5. 결과 통보

결정 내용을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즉시 통보


STEP6. 조치 및 사후관리

피해자 구제,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및 시정 권고

5. 인권경영위원회에서는 어떤 결정을 내리나요?

- 인권경영위원회는 상정된 사건에 대해 조정, 권고, 기각 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 **조정**
당사자 간에 합의를 조정합니다.
 - ▶ **권고**
(비사법적) 징계 권고 또는 제도 개선 추진을 결정합니다.
(사법적) 고소, 고발, 법률구조요청 또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방법을 안내합니다.
 - ▶ **기각**
인권침해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합니다.

6. 신고자를 위한 보호 사항

-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를 끝까지 보호합니다
 - ▶ **철저한 비밀 유지**
인권경영위원회 위원, 담당 부서는 신고 내용을 외부에 절대 발설하지 않습니다.
 - ▶ **불이익 방지**
신고를 이유로 한 어떠한 차별이나 보복 행위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 ▶ **위반자의 처벌**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될 때에는 그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신분공개 책임이 있는 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보호 사항과 관계없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불이익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7. 안전한 ARKO를 만들기 위한 노력

- ARKO는 인권이 존중되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 ▶ **인권영향평가 및 인권실태조사**
매년 기관의 인권 리스크를 파악하고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 ▶ **윤리인권지수 조사**
기관의 윤리·인권 수준이 어느 정도 도달했는지를 매년 파악합니다.
 - ▶ **사후관리와 내재화**
인권침해 2차 피해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교육·캠페인·규정 정비 등을 통해 실생활에서 인권 존중을 실천하도록 합니다.

모두가 존중받는 ARKO를 위한

'인권침해 구제절차'

2025년 12월 발행

